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특별 지원〉

■ 이정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869호)

2026.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윤 상 열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특별 지원	2
가. 검토의견	5
나. 관계기관 의견	10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정현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5. 11. 3.

다. 회 부 일 : 2025. 11.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 범죄 전반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과 함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를 두고 있음.

그러나 연인 또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성적 강요는 일반적인 폭행·협박과 달리 관계의 지속성 및 심리적 종속 구조로 인해 피해가 은폐되거나 장기화될 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피해자 지원의 확대가 지적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밀한 관계 또는 과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외에 긴급 안전조치 및 신변보호,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한 긴급 주거 지원등의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23조의3 신설).

III. 검토의견

1.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특별 지원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친밀한 관계 또는 과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지원 외의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등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3조의3(친밀한 관계 성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밀한 관계 또는 과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외에 다음 각 호의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긴급 안전조치 및 신변보호

현행	개정안
	2. <u>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한 긴급 주거 지원</u> 3. <u>관계 회복 또는 관계 종료를 위한 전문 상담</u> 4. <u>그 밖에 친밀한 관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u> ② <u>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상담소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보호시설에 친밀한 관계성폭력 전담 인력을 배치하거나 전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u> ③ <u>제1항의 지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공할 수 있다.</u> ④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원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u>

현행	개정안
	⑤ 제1항에서 “친밀한 관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계를 말한다. 1. 상호 간에 애정을 기반으로 합의한 교제 관계이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것 2. 3개월 이상 지속된 관계이거나 그 기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동거, 정기적 만남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관계일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성폭력범죄부터 적용한다.

가. 검토의견

□ 개정안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게 긴급 안전조치 및 신변보호, 긴급 주거 지원, 관계 회복 또는 종료를 위한 전문 상담 등의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들 피해자에 대한 보호제도를 두텁게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며,

개정안의 내용이 이와 같은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는 크게 다 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개정안에 따른 특별 지원의 대상자를 결정하는 친밀한 관계의 요건이 적절히 설정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안 제23조의3제5항은 ‘친밀한 관계’의 성립 요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해당 요건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특별 지원의 대상자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특별 지원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선 친밀한 관계의 요건이 적절히 설정될 필요가 있음.

구분		친밀한 관계의 요건(모두 충족 필요)
안 제23조 의3 제5항	제1호	<u>상호 간에 애정을 기반으로 합의한 교제 관계이거나</u>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것
	제2호	<u>3개월 이상 지속된 관계이거나</u> 그 기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u>동거, 정기적 만남 등</u> <u>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관계일 것</u>

○ 친밀한 관계의 구체적인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안 제23조의3제5항제1호의 경우 애정·합의·교제 등의 용어를 통해 친밀한 관계를 부부·연인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로 한정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 동 요건에 따라 사회통념상 친밀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① 직계 준비속 등 배우자를 제외한 친족¹⁾이나 ② 친구·지인 등의 경우²⁾가 친밀한 관계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³⁾

○ 안 제23조의3제5항제2호의 경우, 친밀한 관계를 관계의 지속성이나 심리적인 종속 구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은폐 등의 위험이 객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관계로만 한정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이 요건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3개월’이라는 교제 기간이 이와 같은 위험의 발생 가능성을 구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인지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둘째, 개정안에 따른 특별 지원이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을 보완하거나 이와 구분되는 지원으로서, 현행 법률에 따른 지원과는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관계 형성에 있어 상호 간의 합의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2) 상호 간의 애정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관계가 아닌 것으로 보임

3) 참고로, 현재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률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제3조제1호는 여성폭력의 정의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을 포함하는데, 해당 법률 제정 당시 제안이유에서 친밀한 관계와 관련하여 연인 등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데이트폭력’을 언급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법률 역시 개정안과 유사하게 연인 등의 경우를 친밀한 관계로서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임.

구분		특별 지원 사항	
제23조 의3	제1항	제1호	- 긴급 안전조치 및 신변보호
		제2호	-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한 긴급 주거 지원
		제3호	- 관계 회복 또는 관계 종료를 위한 전문 상담
		제4호	- 그 밖에 친밀한 관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 개정안은 특별 지원으로서 ① 긴급 안전조치 및 신변보호, ② 긴급 주거 지원, ③ 전문 상담 및 ④ 그 밖에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전담 인력 배치 또는 전담 프로그램 운영을 규정하여 특별 지원을 수행하는 인력·시설 등의 여건을 마련하고 있음.

- 친밀한 관계의 특성상 성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생활환경을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의 보호 및 분리가 요구될 수 있는 점을 반영하는 한편, 전문 상담을 통하여 피해자가 처한 문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특별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개정안은 친밀한 관계의 특성상 성폭력범죄가 가정폭력 또는 스토킹과 결합하여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다른 법률과의 중복지원을 허용하면서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을 예시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해당 범죄의 처벌·수사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률임.

해당 범죄의 피해자 지원을 주로 규정하는 법률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 또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이므로, 예시 법률을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음.

- 둘째, 개정안은 ‘긴급 안전조치’를 특별 지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참고로, 긴급 안전조치의 내용이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임시조치와 같이 격리·접근 금지 등을 동반하는 것인 경우, 다른 법률에서 법원의 결정을 요하는 등 관련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⁴⁾

- 셋째, 신변 보호·주거지원 및 상담 등의 특별지원은 성폭력방지법 등의 다른 법률에서 이미 유사한 지원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여, 5)6)7) 별도 규정의 필요성에 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6.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 넷째, 그 밖에 친밀한 관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은 구체적인 지원 사항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는 등의 보완이 요구될 수 있음.

□ 한편, 성폭력처벌법은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수사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률로,⁸⁾ 개정안을 수용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주로 규정하는 성폭력방지법에서 규정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⁹⁾

-
1. 성폭력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연계
 3. ~ 7. (생략)

제13조(보호시설의 업무 등) ①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피해자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 6. (생략)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직업훈련 등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
5. ~ 10. (생략)

제8조(보호시설의 업무) ① 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다만,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에게는 제1호 외의 업무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장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업무(주거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숙식의 제공
2.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 8. (생략)

7)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지원시설의 업무)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톱킹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 피해자등의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일상생활 복귀 지원
3. 피해자등의 보호와 임시거소의 제공 및 숙식 제공
4. ~ 11. (생략)

8)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더라도, 수사 및 재판과정상의 지원을 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보임.

9) 이 경우, 성폭력방지법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이므로, 소관 상임위원회가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임

나. 관계기관의 의견

-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친밀한 관계의 정의가 다소 모호하여 개별 사안의 일관된 기준 적용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한편, 법률체계를 고려하여 이 법이 아닌 성폭력방지법에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59
